

공지사항

공고 및 고시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전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54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7. 6. 30

통상산업부장관

중전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중전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와 중전기시험에 관해 상호인증 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시험의 신청) 중전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이하 “공인인증시험”이라

한다)과 개발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규격은 다음 각호 1의 규격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및 단체표준
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4. 기타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의 규격

부 칙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01호

'98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7. 19.

통상산업부장관

'98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 계획

1. 목적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5조(연차 실행계획)에 따라 '98년도에 연구해야 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기 위함.
- 대체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및 편의성 제고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의 선진화 추구
- 이용기술의 수요개발을 통한 보급확대로 국내 에너지 수요중 대체에너지 비중 제고
- 대체에너지로써의 환경보전과 미래에너지원 확보에 기여

2. 정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기본목표

< 기본 계획 >

	제 1 단 계	제 2 단 계	제 3 단 계	제 4 단 계
계획기간	'88~'91	'92~'96	'97~2001	2002~2006
개발목표	연구기반구축	실용화기반구축	중점기술개발	기술의 상용화
보급목표	금융지원	수요개발, 시범보급	시장창출	보급확대

3. 추진체계 : (생략)

4. '98 연구수행과제 선정지침

- 기업이 사업주관기관이 되어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우대
- 기술분야중 상호 보완관계에 있거나 연계가 가능한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중·대형화한 과제 우대, 이 경우 기초연구분야는 대학에서 연구도록 할 수 있음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심하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중간진입 연구시 지원

5. 사업비 지원

- 에너지지원사업 특별회계. 과학기술처 선도기술개발사업비, 한국전력공사 연구개발비 등에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로 확보된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원

6. '98년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공모과제 : "별표" 참조

- 현재 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과제로서 '98년도에도 계속 수행키로 승인된 과제는 금번 공모에서 제외
- "별표" 과제외에 특별히 우수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대체에너지기술은 지원 가능

7. 연구비 지원 비율

- 기업-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공동수행 과제 : 소요사업비의 75% 이내
- 기업, 기업-기업간 공동수행과제 : 소요사업비의 60% 이내
-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소요사업비의 100% 이내
-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소요사업비의 60% 이내

8. 신청자격 및 절차

- 신청자격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 '97. 7~ 8. 31

- 신청방법 및 사업관리 : 계획서의 작성방법, 신청서식 및 사업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에너지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기술개발운용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64호('97. 4. 25)] 및 선도기술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337호('96. 10. 18) : 선도기술개발사업에 한함]에 따름.

- 접수 및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연구관리 1부
 - 주소 : 우)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신용카드 빌딩 3층
 - 전화 : (02)5809-341~345
 - 팩스 : (02)522-809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acer.or.kr>

[별표]

'98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추진과제

I. 일반추진과제

1. 태양열

추진과제
가. 건물 태양열 복합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설계 실용화 기술개발
나. 산업용 태양열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온 고효율 집열기 개발 및 실용화○ 중·고온 축열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태양열 발전 기반기술 개발

2. 바이오에너지

추진 과제
가. 연료용 알콜 생산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균주개발
나. 메탄가스 전환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폐수 메탄가스 전환공정 개발 ○ 1,000만m³/년 이상규모 LFG 실증실험
다. 미래 바이오에너지 기술기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디젤, 바이오매스 가스화등

3. 폐기물 에너지

추진 과제
가. 열분해 이용기술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플라스틱, 페타이어 등 고분자 폐기물 이용 열분해 이용시설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화 및 오일화
나. 재생 연료 제조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윤활유 정제기술 개발

4. 석탄이용

추진 과제
가. 석탄이용 가스화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가스화 반응장치 및 관련기술 개발 (선도기술개발(G-7)분야 제외)
나. 석탄액화 기술 실용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직접액화 장치 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식 시험설비 운전

5. 수소에너지

추진 과제
가. 연료용 수소 제조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고효율 수소제조 공정기술
나. 수소저장·이용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 수소저장 기술 ○ 수소자동차, 냉·난방기 등 대체에너지 원으로의 이용 기초 기술

6. 풍력

추진 과제
가. 풍력발전 요소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 기어박스 등 핵심요소기술

II. 선도기술개발(G-7)과제

1. 태양광

추진 과제
가. 고효율 태양전지 실용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고효율 Si 태양전지 실용화
나.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용기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시스템 주변장치의 신뢰성 향상연구 ○ 응용제품 기술개발

2. 연료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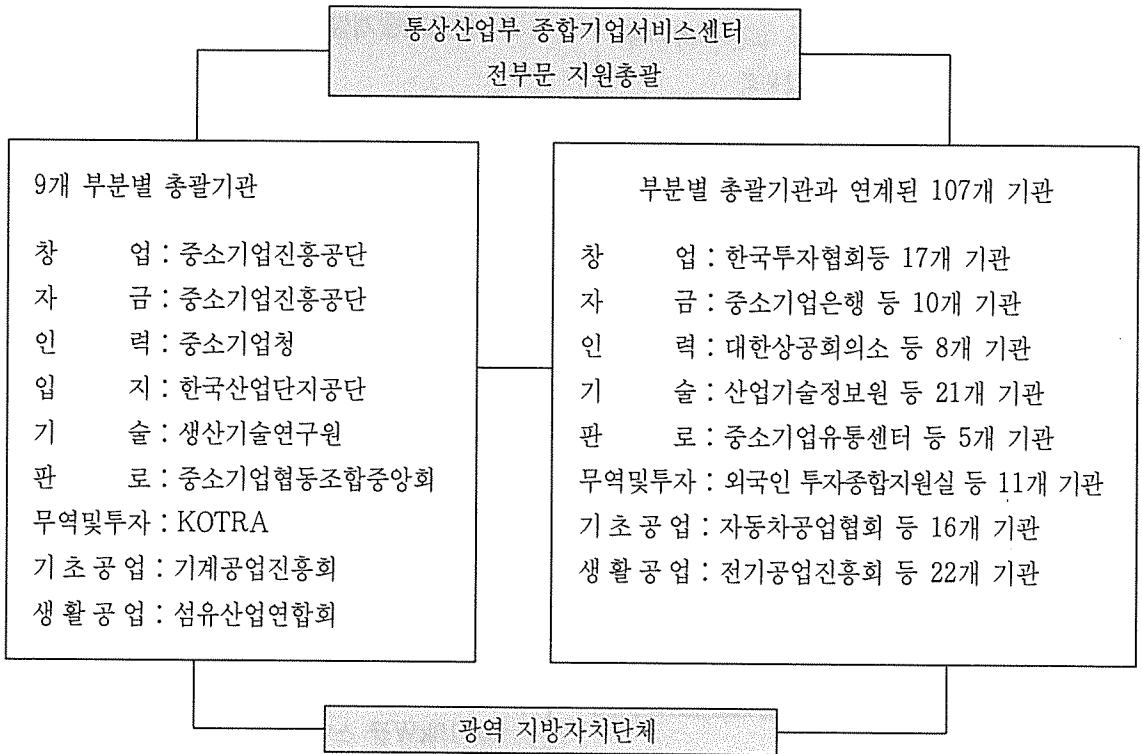
추진 과제
가. 인산형 연료전지 실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급 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kW급 스택, 시스템 및 요소기술개발

통상산업부, 『종합기업서비스센터』 출범과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종합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일부터는 인터넷(INTERNET)을 통한 기업서비스시스템인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을 개통한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이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설치한 기업애로전담기구이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창업, 자금, 인력, 기술, 입지, 판로, 무역 및 투자, 기초공업, 생활공업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통상산업부를 비롯하여 100여개 이상의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9개 분야별로 총괄기관 1개씩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여타 기업지원기관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연결하여 지방중소기업에도 직접 도움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

유하고 있는 입지, 자금 등의 정보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센터는 기업이 전화, 팩스 등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상산업부와 부문별 9개 총괄기관의 전화에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퇴근 후에도 기업이 애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기관은 다음날 출근 후 즉시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다.

부문별 전담총괄기관의 연락 전화,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관	연 락 처	
		전 화	팩 스
총 합 안 내	통상산업부 산업진흥반	503-2500 500-2770/2	503-2506
창 업	중소기업진흥공단	769-6652	769-6708
자 금	중소기업진흥공단	769-6631	769-6657
인 력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503-2512
입 지	한국산업단지공단	829-7373	829-7367
기 술	생산기술연구원	8601-663	8601-683
판 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786-4311	786-4310
무 역 및 투 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1-4384	551-4463
기 초 공 업 정 보	한국기계공업진흥회	369-7810	369-7898
생 활 공 업 정 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528-4068	528-4055

* 상기전화는 자동응답전화기로서 퇴근후에도 기업체가 메시지를 남겨놓을 경우 다음날 출근후 처리하게 되어 있음.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의 이용

통상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종합기업서비스센터와 병행하여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를 금년 8월 1일부터 개통한다.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은 Innovation Network을 말하며 기업의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전산망을 의미한다.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은 통상

산업부 ↔ 기능별 총괄기관 ↔ 관계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인터넷 (INTERNET)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애로사항도 인터넷 (INTERNET)을 통해 전달이 되도록 운영된다.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은 8월 1일부터 인터넷 주소 : <http://www.innonet.nm.kr>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전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제공

-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자금, 시책 및 관련법령과 같은 제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

■ 기업의 애로를 인터넷 상으로 상담하여 처리

-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내에 민원대화방을 개설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정보망을 통해 제기하면 관련기관이 해결
- 기업 등 이용자들이 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 기업지원기관을 홈페이지로 연계

-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들의 각종 기업지원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기타 주요 제공기능

- 각 지원기관에서 생성되는 최신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정보제공 기능
- 게시판, 대화방을 설치하여 이용자들간, 또는 이용자와 기업지원기관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이미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는 전화를 통해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의 주소인 <http://www.innonet.nm.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는 산업기술정보원의 전용망인 전화번호 3295-0760으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통상산업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나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 운영과 더불어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한 상담도 계속한다.

